KR-SYNA-200014-200429

2020년

미숙아 가정이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정보

공편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사회복지사 한수정
삼성서울병원 사회복지사 유지연
삼성서울병원 사회복지사 홍예란
서울대학교병원 사회복지사 이민경
아주대학교병원 사회복지사 서소라

대한신생아학회의 이른둥이 건강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복지정보는 본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신생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Neonatology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ocial Workers

2020년

미숙아 가정이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정보

* 본 책에 수록된 정보는 2020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20, AbbVie Ltd. All rights reserved. - 본 책자의 저작권은 한국 애브비에 있습니다.

아이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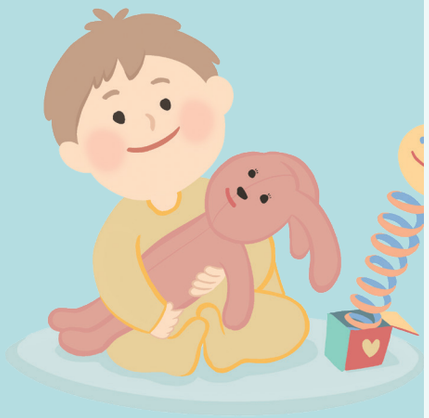

치료비 지원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01. 입원치료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지원 ····· 04

02.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 05

03.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제도 ····· 06

2. 보건소 지원

0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07

0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08

3. 민간 후원기관 지원 ····· 09

양육 지원

1. 양육비 지원

01. 아동수당 ····· 10

02. 양육수당 ····· 10

2. 물품 지원

01. 기저귀 지원 ····· 11

02. 조제분유 지원 ····· 11

3. 아이돌봄 서비스 ····· 12

4. 발달검사 지원

01.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사업 ····· 13

02.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 및 환아관리 ····· 14

재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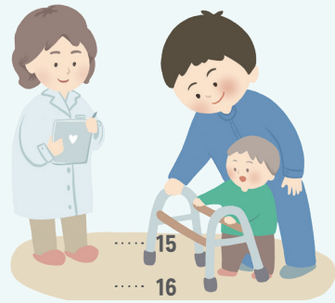

1. 재활 치료 및 교육 지원 ····· 15

01. 발달재활서비스 ····· 16

02. 교육청 특수교육치료지원 서비스 ····· 16

03. 민간 후원기관 재활치료비 지원 ····· 17

04.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 ····· 17

2. 장애등록 ····· 18

3. 보조기기 지원

01.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 21

02. 장애인 보조기기 공학센터 ····· 22

03.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22

4. 장애아동 돌봄지원

0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23

02.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23

0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23

보호자편

임신/출산 지원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24

2. 취약 상황에서의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01. 수급권자 해산급여 ····· 25

02.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25

03.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26

04.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 26

3.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27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28

5.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 29

출산 후 지원

1. 산후조리 지원사업

0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30

0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31

2. 산후 우울증 상담 ····· 32

3. 산후 건강관리

01. 모유 수유 교실 운영 ····· 33

02. 유축기 무료 대여 사업 ····· 33

4.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가정방문서비스) ····· 34

5. 전문가 부모상담 ····· 35

취약가정에서 미숙아 키우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36

2. 차상위 계층 보호제도 ····· 37

3.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 38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39

5.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40

6.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사업 ····· 41

7. 주거비 지원제도 ····· 42

8. 미혼 부모 지원제도 ····· 43

※ 부록 1_ 20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산정 기준표 ····· 44

※ 부록 2_ 에딘버러 산후우울검사 자가진단테스트 (EDPS, 한국어판) ····· 45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01 입원치료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지원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생후 28일까지 : 본인부담 면제** (환자 부담 진료비 = ② + ③)
- **15세 이하 아동 :** 본인부담 5% 적용 (환자 부담 진료비 = ① + ② + ③)

영수증					
항목	급여			③ 비급여	
	일부본인부담		② 전액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① 본인부담	공단부담			
	(생후 28일 이내) 0% (15세 이하) 5%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별한 신청 과정 없이 자동 적용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으로 문의하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02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2.5kg 이하** 저체중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만 5세까지
(신청 후 등록 완료 시 자동 적용)
2020.1.1.부터 시행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 보험공단 »

- 직접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팩스 신청

요양기관에서도 신청 가능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주치의 확인 필요)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에서 출력 가능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으로 문의하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03 희귀·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확진 받은 자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되는 자
(※ 확인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항목(보험 적용 분)의 **본인부담 10% 적용** (등록일로부터 5년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치의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작성

»

환자 또는 보호자
작성된 신청서에 동의 서명

»

건강보험자
· 병원 원무과에 등록 신청 대행 요청 ·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직접 신청

의료급여자
시 · 군 ·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혜택 소급 적용 (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혜택적용)
※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가 등록된 대상자에 한해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p.8) 신청 가능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으로 문의하세요.

2. 보건소 지원

0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기준
- **미숙아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일반 신생아실 입원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 질환(질병코드 Q)을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 수술한 경우

· 소득기준
-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쌍둥이 출산한 경우 모두 혜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p.44 부록1 참조)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합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미숙아 :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하 전액지원 / 초과금 90% 지원

미숙아 출생시 체중	2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300 만원	4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2) 선천성이상아 : 최대 5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 :** 진단서, 입원진료비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사본
· **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 후)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맞벌이 부부 모두 준비)
(수급권자 및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로 대체 가능)
· **개인 :** 통장 사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 부부 모두 준비)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2. 보건소 지원

0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기준 :** 산정특례 등록된 1,038종 희귀질환자
  (※ 확인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 **소득기준 :**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희귀질환군	환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	일반 희귀질환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기준중위소득 200% 미만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기준중위소득 160% 미만	기준중위소득 240% 미만
재산 기준	일반 희귀질환	지역별 최고재산액 300% 미만	지역별 최고재산액 500% 미만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지역별 최고재산액 1,000% 미만	지역별 최고재산액 1,200% 미만

※ 혈우병 환자가 수술이나 사고 등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면제
※ 상기 사업의 세부 소득, 재산 기준은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자료실을 참고해주세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지원 대상 질환 / 조건	지원 범위
요양기관 진료비	1,038개 희귀질환 및 합병증에 대한 진료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만성신부전 요양비	만성신부전증 (N18)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 투석의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103개 질환으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보장구 구입비	93개 질환으로, 장애인이 처방전으로 구입한 장애인 보장구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간병비	97개 질환으로,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舊 지체·뇌병변 1급 장애인)	월 30만원
특수 식이 구입비	28개 질환 (19세 이상) * 19세 미만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p.14)에서 지원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상이할 수 있어 보건소로 문의 후 준비)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3. 민간 후원기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소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초과한 경우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개인 사보험(태아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이 없는 경우
- 재정적 어려움으로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추천 필요한 경우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통해서 신청 (경제력 및 지원 타당성 평가 후 신청 준비)
2) 직접 신청 가능한 기관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

어떤 민간 후원단체가 있나요?

	내용	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다솜이 작은숨결 살리기 지원사업	입원치료비 (최고 2천만원)	이른둥이로 생후 24개월 이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입원 또는 퇴원 후 1개월 이내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문의
마리아 의료재단, 사랑의 본부 후원 이른둥이 의료비지원사업	입원치료비 (최고 2천만원), RSV 예방접종비 (최대 5회 실비 지급)	이른둥이로 생후 24개월 이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입원 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대한적십자사 (02-3705-8000)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한국심장재단	수술치료비 (최고 1,500만원)	선/후천성 심장병, 얼굴기형, 콩팥이식, 18세 이하 수술 필요 환자 중, 저소득층	수시 접수	협약병원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

기타 (공동모금회 중앙 및 지역 지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하세요.

1. 양육비 지원

01 아동수당

| 대상

만 7세 미만 아동의 부모

| 혜택

아이 1인당 월 10만원 (신청 시기 기준, 0개월 수당부터 소급 지급)

|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준비서류

- **신청서식 :** 아동수당지급 신청서 (신청기관 및 사이트에서 확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02 양육수당

| 대상

양육수당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을 둔 부모 (신청월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 보육료 ·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혜택

구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월 20만원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월 17만 7천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5만 6천원	
48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2만 9천원	월 10만원
48-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0만원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출생신고서 기준)부터 소급 지원함

|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연중 수시접수)

| 준비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신청기관 및 사이트에서 확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통장사본 1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2. 물품 지원

01 기저귀 지원

|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 생활 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혜택

아이 1인당 월 6만 4천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준비서류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자격관련 증명서 (신청기관 및 사이트에서 확인)

02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영아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입양가정의 아동

| 혜택

아이 1인당 월 8만 6천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기관 및 사이트에서 확인)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해당 자격관련 증명서
- 산모 신분증 ※ 부부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월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문의)
- 기타 관련서류는 보건소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3. 아이돌봄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양육공백 가정(취업,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이 있는 가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봄
※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할당된 국가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서비스 시간만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카드 결제됨.
서비스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영아 종일제 돌봄

• **대상 :** 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하, 일 3시간 이상 이용 원칙)

시간제 돌봄 (일반형 / 종합형)

• **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서비스 등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720시간 이내, 1회 2시간 이상 이용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지원가정 :**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미지원가정 :** 아이돌봄지원센터 (www.idolbom.go.kr)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4. 발달검사 지원

01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사업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p.44 부록1 참조)
- 다자녀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 예산 범위 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혜택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AABR, AOAE)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1회 지원 /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하여 최대 2회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에 한함
- 출생 후 28일 이후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검사(ABR 혹은 ASSR) 비용지원 최대 7만원

|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준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에서 난청으로 확진 받은 경우,
보청기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 131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p.44 부록1 참조)의 출산 가정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에서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신청 및 지원 절차

1. 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구비
2. 서류 보건소에 제출하고, 복지부 심사 결과 대기
3. 보건소에서 지원가능 여부 통보('지원확인서' 지급)되면, 보청기 자비로 구입
4.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증 발급 요청
5. 보청기 검수 확인증, 지원확인서, 영수증을 구비하여 보건소에 제출
6. 복지부에서 서류 검토 후 지원 최종 확정되면 보건소 통해 지원금 지급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4. 발달검사 지원

02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 및 환아관리

| 대상

• 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p.44 부록1 참조)
다자녀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 확진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소득기준 없음

| 혜택

•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에 한함
- 출생 후 28일 이후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최대 2회)

• 정밀검사비(확진검사) 지원
: 2차 정밀검사(확진검사)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청구

• 환아관리 지원
: 대사이상 진단받은 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구분	대상 질환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희귀 및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비용 연내 지원)

| 준비서류

•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검사비) 지원신청서
• 검사비(진료) 영수증과 검사(진료)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기준 확인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진단서 (정밀검사비 신청,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1. 재활 치료 및 교육 지원

미숙아로 출생 후 또래보다 작고 발달지연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조기에 재활을 시작하고 적절한 발달자극을 주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극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재활치료와 복지관 및 사설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발달 재활치료 등을 이용하여 아이의 발달을 촉진해 보세요.

다회의 치료, 다수 기관의 이용은 오히려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 횟수가 부족할까...', '치료 종류가 다양한데 다 경험해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놓아두시고, **의료진과 상의하여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 종류, 횟수, 방식을 결정하세요.** 통상적으로 **주 2~3회, 회당 30분~1시간 정도**의 치료면 충분하고, 그 외에는 가정에서 치료내용을 복습하고 놀이자극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소아재활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아동발달센터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기관을 찾아도 대기가 길다보니, 계속되는 기다림에 불안감만 커지게 됩니다.
의료진에게 재활을 권유 받으면 먼저 **거처 인근의 소아재활병원 소개를 요청**하시고,
아동발달센터는 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검색하세요.
장기적인 치료 유지를 고려해 왕래가 용이한 2~3개 기관을 골라 대기를 신청하세요.

또래보다 발달이 느린 지금, 보육/교육 기관에서 우리 아이가 많이 치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든다면,

장애통합/전담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01 발달재활 서비스

|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p.44 부록1 참조)
- **건강기준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아동

※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장애 미등록 상태이더라도 발달지연에 대한 증빙자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결과지 등) 제출 시, 신청 가능.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 필수

| 혜택

언어, 청능, 미술, 음악, 놀이, 심리, 감각통합, 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금	월 22만원	월 20만원	월 14~18만원

|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02 교육청 특수교육 치료지원 서비스

	장애영아교실	치료지원 서비스
대상	만 3세 미만의 발달지연 영유아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혜택	장애의 조기발견 및 발달재활 교육 제공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부모상담	물리/작업/언어/놀이/음악/심리 등의 치료비용 지원 (지원금액은 지자체 별로 상이)
신청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부 (☎ 044-203-6560)	

03 민간 후원기관 재활치료비 지원

기관명	대상	혜택	문의
다솜이 작은숨결살리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만 6세 이하 이른둥이	병원 및 복지관에서 실시한 재활치료비 지원 (1년간 최대 150만원)	02-3675-1231
푸르메재단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최대 200만원)	02-6395-7010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비 지원 (최대 150만원)	
		검사/주사/수술비, 치과치료비 등 지원 (최대 300만원)	02-6395-7018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 (최대 50만원)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최대 400만원)	
		부모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최대 200만원)	
		공연(뮤지컬 등) 지원	
		보조기구 지원 (최대 250만원)	02-6395-7003
밀알복지재단	0~7세 장애영유아 (장애 미등록자 포함)	의료비 지원 (최대 200만원)	070-7462-9135 (홈페이지 통해 직접 신청 가능)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가정의 8~19세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및 의료소모품비 지원 (월 20만원 이내, 1년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가정의 19세 이하 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최대 500만원)	
대한적십자사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정의 6세 이하 이른둥이	병원 및 복지관에서 실시한 재활치료비 지원 (6개월간 최대 300만원)	1577-8179 (홈페이지 통해 직접 신청 가능)

※ 지원기준 및 혜택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사전에 병원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 필요

04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

기관	특징	참고사이트
장애 통합/전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1:3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유치원 특수학급	장애 유형별 유치부 과정 운영 통학 어려울 시, 가정방문 순회교육 신청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2. 장애 등록

발달지연이 지속되면 의료진들은 장애등록을 권유할 것입니다. 이때 많은 보호자가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장애등록에 따른 불이익, 낙인 등을 염려하며 장애등록을 고민합니다. 장애등록은 선택적인 것으로 가족들의 충분한 상의와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타인에 의해 장애등록 여부가 공개 및 확인될 수 없으며, 차후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등록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여 아동의 보호, 교육, 재활을 지지하고, 권익보호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사회에 요구하기 위해 장애등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 진단
- 의료 기관 방문
- 장애 검사 및 평가
- 장애 진단서 및 의무기록발급

»

서류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진, 준비서류 제출
- 장애인 등록 신청 접수

1~2개월 소요

장애 판정
- 장애 결정 및 통지
- 복지카드 발급

«

장애 심사
- 국민연금공단 심사
- 장애 유형 및 정도 판단

※ 장애유형 (15개)에 따라 판정시기 상이하나, 6개월~1년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후유장애가 보일 때 장애등록을 신청하며, 뇌병변장애는 만 1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는 만 2세 이상에서 판정 가능

※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 합산하여 최종 장애정도 판정

※ 장애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2. 장애 등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요 내용	장애정도		문의 및 신청
	중증	경증	
장애인 차별금지 활동	O	O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신고접수·상담·피해 회복 활동	O	O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조사·적합성 확인·권리보장 활동	O	O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 멘토링, 부모상담, 장애인식개선, 여가지원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O	O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하	O	O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무주택 세대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O	O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및 고용 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평가, 보조공학기기 등)	O	O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O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비용 및 활동비용 지원	O		읍·면·동 주민센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O		읍·면·동 주민센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지원	O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활동 지원	O	O	읍·면·동 주민센터
특허출원료·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O	O	특허청
상속세 상속공제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O	O	관할 세무서
소득공제 추가(인적·의료비·특수교육비·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O	O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신청
승용자동차 LPG 사용 허용	O	O	차량등록기관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O	O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O		자동차영업소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O		시·군·구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O	O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보행 상 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O	O	교통안전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O	O	복지카드 제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O	O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O	O	KBS / 관할 한전지사
시·청각·발달 장애인 시청 지원 (방송수신기 및 맞춤 영상물 보급 등)	O	O	시청자미디어재단
통신비(유선전화, 인터넷, 이동통신) 할인	O	O	해당 통신회사
교통비(공영버스, 도시철도, 철도, 국내 항공/여객선) 할인	O	O	복지카드 제시
공공시설(국·공립 공원·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	O	O	

2. 장애 등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요 내용		장애정도		문의 및 신청
		중증	경증	
전기요금 할인		○		관할 한전지사
도시가스요금 할인		○		관할 도시가스회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운송수단 운행		지자체별 상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체·뇌병변·청각 장애인 운전교육		○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장애인 치과치료 지원 (전신마취 등 장애 맞춤형 진료, 비급여 진료비 할인)		○	○	지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책나래 서비스 (도서관 자료 무료 택배 통해 배달/회수)		○	○	국립장애인도서관 거주지 공공도서관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	○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 아동 전문 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 병원학교 등) 운영		○	○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저소득층	○	○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아(만 18세 미만) 가족 양육 지원	저소득층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지원	저소득층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자립자금(생업자금, 생업/출퇴근용 자동차 등) 대여	저소득층	○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연금 지급	저소득층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 수당 지급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 아동부양수당 지급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 재판정 검사비(10만원 이내)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 진단서 발급비(1만 5천원~4만원)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	읍·면·동 주민센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 바우처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	읍·면·동 주민센터
가사간병 방문 관리사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2종	○	○	복지카드 제시

※ 장애정도 부합하더라도, 장애유형, 연령, 소득수준, 별도 심사 기준 등을 통해 혜택 적용 여부 변경 가능
※ 지자체 예산 및 자원체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될 수 있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3. 보조기기 지원

미숙아 중 뇌성마비를 진단받거나 원인 미상의 신체적 장애를 보일 경우, 상태에 맞는 보조기기 적용을 통해 재활의 효과를 높이고, 발생할 수 있는 신체변형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기기는 성장에 따라 자주 교체가 필요하며, 구입비용도 높아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아동의 상태(키, 몸무게, 용도, 사용 공간, 사용빈도 등)에 맞는 보조기기를 맞춰야 하며,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01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 대상

- 장애인 등록자로, 의사로부터 보험급여 대상 품목의 보조기기를 처방받은 경우
-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등록을 할 예정자로, 의사로부터 보험급여 대상 품목의 보조기기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 대상자에 한하며, 전동보장구, 자세보조용구,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소급 적용 불가)

| 혜택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 지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 지원
	-	상한액 범위 내에서 90% 지원

※ 내구연한 내 1회 지원이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교체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의료급여 대상자

의사에게 보조기기 처방받음 → 시/군/구청에 처방전 제출하고 사전승인 → 보조기기 구입 → 의사에게 보조기기 검수 확인 → 시/군/구청에 구입비 환급요청

보조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 검수확인서

건강보험대상자

의사에게 보조기기 처방받음 → 보조기기 구입 → 의사에게 보조기기 검수 확인 → 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 환급요청

보조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 검수확인서

※ 자세보조용구,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전동보장구는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승인 필요

3. 보조기기 지원

02 장애인 보조기기 공학센터

| 대상
등록 장애인

| 혜택
보조기기 상담 및 무료 대여 서비스

| 신청
관할 보조기기 센터

03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대상
만 24세 이하의 지체/뇌병변 장애 아동
(지자체 별로 예산 달라 운영 여부, 장애 또는 소득 정도에 따른 대상자 결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혜택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보조기기 점검 및 유지 보수 (일부 본인부담 필요)

장애인 보조기기

|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4. 장애아동 돌봄지원

0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 대상
- **건강기준 :**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p.44 부록1 참조)

| 혜택
도우미 파견하여 임시보육, 양육자 보조, 외출 등 지원 (연 720시간, 국비지원)

|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참고사이트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https://broso.or.kr)

02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대상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 아동 (만 5세 이하 영유아는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로 인정)

| 혜택
최대 478,000원 지원

|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0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대상
만 6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 혜택
'활동보조인'이 가정 등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

|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p.44 부록1 참조)
- **건강기준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조기진통, 양막 조기파열
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임신주수 관계없음 :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 심부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00만원 한도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90%, 상급병실 및 특식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 :**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진료확인서
- **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 (맞벌이 부부 모두 준비,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관련 증명서로 대체 가능)
- **개인 :** 통장 사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 부부 모두 준비), 신청자 신분증 (본인확인용)
- **기타 :** 해당자 제출 서류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출생 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사산 : 사산 증명서 1부 (해당 내용 적시된 경우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휴직자 : 휴직 증명서 (유급휴직자는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2. 취약 상황에서의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01 수급권자 해산급여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p.36)를 통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사산, 유산 포함)한 경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p.39)를 통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출산(사산, 유산 포함)한 경우

| 혜택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신청
거주지의 시·군·구청
- 유산(인공임신중절수술 제외) 및 사산의 경우 : 의사소견서 제출
- 출산예정자 :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산모수첩 등 제출
- 출산자 : 출산신고 시 접수

02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대상
등록 장애인 여성이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했을 때
(수급권자의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

| 혜택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100만원 지원

|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2. 취약 상황에서의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03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대상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경기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혜택

보건복지부 긴급지원(p.38)	서울형 긴급지원(p.40)	경기도형 긴급지원(p.41)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100만원 지원

※ 수급권자 해산급여(p.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p.30)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 거주지의 시·군·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04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 대상

임신확인서에서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산모

| 혜택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지원 (국민행복카드 제공)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p.27)'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신청

- 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 단축번호 4)
- 사회서비스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세요.

3.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산부인과 의사 확인 필요)된 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신 1회당 의료비 60만원 지원 (다태아 임신 시, 100만원)
-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신청하는 경우만 적용)

※ 분만취약지역

- **경기** : 양평군
- **인천** : 옹진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철원군, 양구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영천시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상기 지역 내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개설 완료 시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0.2.28. 기준 33개 지역)

※ 혜택 이용 기간

임신 중 신청	출산(유산) 후 신청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출산(유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카드사(또는 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인터넷 신청	거주지의 시·군·구청 방문 신청

카드사(BC카드 1899-465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국민건강보험단(1577-1000, 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세요.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 가능한 법적인 자녀 : 법률상 혼인 중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최대 50개월)

자녀 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 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래일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출생 연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연금 수급연령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 참고사이트 : 복지로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아이사랑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에 문의하세요.

5.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 **다자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으로 3인 이상 표시된 가구
- **대가족 :** 주민등록등본 기준 구성원 5인 이상인 가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전기 요금의 최대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다자녀 할인, 장애인 혜택 등과 중복 적용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

거주지 관할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지사에 문의하세요.

1. 산후조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0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정부 지원	서울시 지원(정부 지원이 안될 시)
신청 자격	거주 기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의 경우 각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 당시부터 서비스 완료 때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소득 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모든 가구(p.44 부록1 참고) (하반기 예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조정 해산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포함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 거주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쌍생아, 둘째아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기준은 관할 보건소 문의) * 예외지원 가능 대상자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비자F-6) ⑦ 미혼모 산모 (만 24세 이하)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⑩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최대) 출산가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 금액 지원	• 정부 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 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 부담
서비스 내용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등) 출산가정의 경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2명 지원)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 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 등

1. 산후조리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서류	• 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권) 및 개인 정보이용 제공동의서 : 보건소 비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해당자에 한함, 관할 보건소에 문의)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사전 전화문의 필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어떻게 이용하나요?

이용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이용방법	• 태아 유형(한 아기, 쌍둥이, 세쌍둥이 이상 등)과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 기간 상이 •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체결 (단, 서울시 지원 대상은 표준형만 선택 가능) • 제공 기관 인터넷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02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 대상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수준 무관)

| 혜택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 신청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산 예정일 30일 이전~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2. 산후 우울증 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후우울검사 자가 진단 테스트(에딘버러 산후우울검사 자가 진단 테스트 EDPS 한국어판 / p.45 부록2 참조) 등을 통해 스스로 산모 자신이 우울하거나 불안한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상담 등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산모

어떻게 신청 및 이용하나요?

1) 온라인 전문가 상담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 상담실 → 출산 상담 → 산전 후 우울증 상담 검색 → 상담 게시글 작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상담 답변

2) 방문상담

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사전 문의 필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보건센터로 문의하세요.

3. 산후 건강관리

01 모유 수유 교실 운영

| 대상

모유 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출산부 및 수유부

| 혜택

-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가 1:1 교육 및 실습을 통한 교정 또는 보건소별 정기적인 집단교육 프로그램 진행
- 모유 수유의 장점 / 수유 자세 지도 및 교정 / 유방 문제 관리 및 해결책 제시 / 모유 수유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자신감 격려 등

| 신청

지자체별 보건소 내용(운영여부,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니 해당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사전 문의 필요

☞ 모유 수유 상담 가능 온라인 사이트
-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상담실 → 출산 상담 → 모유 수유 상담
- 모유 수유시설 검색 http://www.sooyusil.com

02 유축기 무료 대여 사업

| 대상

관내 수유하기 어려운 상황의 출산부(미숙아 출산, 직장인, 젖몸살 등)

| 혜택

모유 유축기 무료 대여

| 신청

지자체별 보건소 내용(대여 가능 여부, 대여 기간, 대여 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니 해당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사전 문의 필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4.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가정방문서비스)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산전, 산후 관리 및 모유 수유, 육아 방법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와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방문에 동의한 관내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기와 산모의 건강 상태 평가, 산후 우울 선별검사, 모유 수유, 신생아 돌보기 등 양육방법 교육 및 상담, 육아 관련 정보제공
- 취약대상(고령임산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미숙아가정 등)을 발굴하여 지역 사회 건강자원과 연계하여 건강복지 지원
- 가족모임, 자조모임을 통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례와 정보 공유
- 지역사회 내 이용할 수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ex. 엄마 모임(부모들의 자체적 그룹 활동) : 베이비 마사지, 안전사고예방, 이유식 등

어떻게 신청 및 이용하나요?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전화, 방문 또는 온라인(https://seoul-agi.seoul.go.kr) 신청 (무료 서비스)

1) 보편방문서비스

- **대상 :**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방법 :** 출산 후 4주(최대 6주) 이내에 1회 방문 (약 60분 소요)

2) 지속방문서비스

- **대상 :** 고위험 가구 임산부 및 영유아
- **방법 :** 출산 전부터 방문 시작하여 아이가 만 2세 될 때까지 총 25회 방문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홈페이지(http://ourbaby.seoul.kr)를 통해 자치구 연락처 및 프로그램 내용 확인 가능.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를 통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자보건서비스에 대해 확인 가능.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5. 전문가 부모상담

미숙아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을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상담실 » 출산 상담 » 육아/소아청소년과 상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 가정양육지원 » 부모상담
» 온라인 양육상담 : 아동 발달, 문제행동, 양육방법과 관련하여 전문상담위원 위촉하여 전문적 상담 진행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별)

https://www.familynet.or.kr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https://babydasom.org » 문의하기
» 전문가 Q&A : 입원치료/재활치료 분야 각 의료진이 온라인으로 상담 진행

대한신생아학회 이른둥이 희망찾기

http://www.preemielove.or.kr » 이른둥이 건강정보 » 전문의 상담 게시판

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평가하여 국가에서 생계비, 주거비 또는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를 통한 부양이 불가하고, 소득 인정액이 제공 급여별로 아래의 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 : 원/월)

맞춤급여	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30% 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의료급여	40% 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주거급여	45% 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교육급여	50% 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등 지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2. 차상위 계층 보호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취약한 상황에 따라 별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의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기준중위소득의 52%	-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기준중위소득의 60%	-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과금(전기세, 통신료, 도시가스요금 등) 할인, 주택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우선권 부여, 양곡 할인지원, 문화공연 할인 등

종류	기준	추가 혜택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의료비 경감
차상위 자활근로자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자	일자리 지원
한부모가족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학비
차상위 장애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장애수당 지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3.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

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그밖의 소득)-차감지출(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② **재산기준 :** 대도시 18,800만원, 중소도시 11,800만원,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지원항목		1인	2인	3인	4인	5인	최대횟수
위기상황 주급여 ①	생계	454,900원	774,700원	1,002,400원	1,230,000원	1,457,500원	6회
	의료	최대 300만원					2회
	주거	422,900원 이내(중소도시, 4인기준), 643,200원 이내(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1,450,500원 이내(4인 기준)					6회
부가 급여 ②	교육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2회(4회)③
	기타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1회 (연료비 6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가구 중, 아래의 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① **소득기준 :**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단위 : 원/월)

지원항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기준	대상자가구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부양 의무자가구	4,749,174	5,983,960	6,862,557	7,741,154	8,619,751	9,498,348

②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5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자 제외

③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소득(가구별 규모), 재산 기준(6억원 이하) 동시 충족

※수급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비(소득 구간별 생계급여 차등 지급), 장제비, 해산비 지원

(단위 : 원/월)

지원항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87,860 ~ 263,579	149,599 ~ 448,797	193,529 ~ 580,587	237,459 ~ 712,376	281,389 ~ 844,166	325,318 ~ 975,955
해산비	70만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장제비	80만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5.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493,615	2,543,183	3,289,990	4,036,798	4,783,605

② **재산기준 :** 2억 5,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③ **주요 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준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 항목 간 중복지원 가능)

지원 항목	1인	2인	3인	4인	추가 지원	재지원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회계 연도)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교육비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 요금 50만원 이내				없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6.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거주)로,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 가출 / 군입대, 중한 질병 또한 부상, 학대, 유기, 폭력피해, 이혼, 실직, 사업실패, 화재, 자연재해 등)에 처해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구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② **재산기준(시가표준액 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③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6개월간의 평균잔액)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사례관리 등 지원

급여내용	지원내용					
생계비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의료비	1회 500만원 이내 비급여 항목 지원 (간병비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에 한함)					
주거비 (단위 : 원/월)	**지역**	가구 구성원 수				
	가구 규모	1~2인		3~4인		5~6인
	시지역	387,200		643,200		848,600
	군지역	290,300		422,900		557,400
	보증금	가구별 5백만원 한도 (※ 1회만 지원)				
교육비 (연/2회)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 (+ 수업료, 입학금)
연료비	월 9만8천원 (10월~3월)					
해산비	100만원					
장제비	100만원					
사례관리 지원	연 1회 최대 400만원 이내 물품(서비스) 지원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참고사이트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www.gg.go.kr/gg_care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7. 주거비 지원제도

주거급여 지원

• **대상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단위 :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 **신청장소 :**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지원내용 :**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 지원
①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② 자가가구: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 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 지원 가능

임차가구					자가가구			
가구 수	지원 상한액(원/월)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 외)				
1인	266,000	225,000	179,000	158,000	지원 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 만원
2인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415,000	351,000	274,000	239,000	지원 주기	3년	5년	7년
5인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504,000	430,000	331,000	291,000				

· 지급일 : 임차가구 - 매월 20일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 수선 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주거비 부담 완화제도

• **대상 :** - 생계급여 + 주거급여 동시 수령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평균 소득 70% 이하)

• **혜택 :** 보증금이 500만원 이하인 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부담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조정
① 무보증금 월세 제도
: 월세 보증금 전액 지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동시 수령자에 한함)
② 보증금 부담 완화제도
: 보증금 50% 지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 2019. 6. 1.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 임대주택부터 적용 예정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문의하세요.

8. 미혼 부모 지원제도

물품지원

• **대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의 양육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
• **혜택 :** 양육에 필요한 분유, 기저귀, 물티슈, 의류 지원 등
• **신청 및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02-331-7080~2, www.holt.or.kr)

양육비지원

• **대상 :** 아동을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
• **혜택 :** 월 20만원
• **신청 및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02-331-7080~2, www.holt.or.kr)

주거지원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미혼 한부모 (무주택 세대주)	미혼 양육모
혜택	주택면적에 따라 1가구 또는 2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 지원	전국 6개 곳에 공동생활가정(주거)을 제공
임대기간	상이하여 사전 문의 필요	1년 (최대 2년까지 입소가능)

미혼 양육모 자립지원

• **대상 :** 미혼 양육모
• **신청 및 문의 :** 동방사회복지회
(02-324-0114, www.eastern.or.kr)
• **혜택 :**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2019년 기준)로,
미혼 양육모의 취업훈련(바리스타, 운전면허, 네일아트, 제과 제빵 등),
창업교육, 취업연계, 직업 적성 검사 등을 지원

첫생일 지원

• **대상 :** 첫돌을 맞이하는 미혼 한부모가족
• **신청 및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02-331-7080~2, www.holt.or.kr)
• **혜택 :** 돌잔치 장소 제공, 식사, 돌 상, 답례품,
사진촬영 및 앨범 지원 등 (분기별 지원)

맞춤형 지원 (행복드림, 희망드림, 응원드림)

•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와 아동
• **신청 및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02-331-7080~2, www.holt.or.kr)
• **혜택 :**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미혼부모 가정에 필요한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생계비 등 지원
① 의료비 : 수술비, 입원비, 치과치료비
② 교육비 : 등록금, 수강료, 교재, 교구비
③ 주거비 : 연체 임대료, 일시 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④ 생계비 : 공공요금(가스/수도/전기), 식료품비 등

사업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오니, 홀트아동복지회 또는 동방사회복지회로 사전에 문의하세요.

20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산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7인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00	276,843	298,842	286,647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590,000	120,068	107,954	121,451
3인	4,645,000	156,170	155,683	158,243
4인	5,699,000	192,080	199,256	195,200
5인	6,753,000	228,710	243,851	233,076
6인	7,808,000	260,770	281,687	268,311
7인	8,868,000	298,124	320,200	311,116
8인	9,928,000	343,406	368,522	368,580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 상기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에딘버러 산후우울검사 자가 진단 테스트 (EDPS, 한국어판)

현재의 기분이 아닌, 지난 7일 동안의 기분을 가장 잘 표현한 대답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우스운 것이 눈에 잘 띄고, 웃을 수 있었다.

0 예전과 똑같았다. · 1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 2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 3 전혀 그렇지 않았다.

2. 즐거운 기대감에 어떤 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0 예전과 똑같았다. · 1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 2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 3 전혀 그렇지 않았다.

3.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웠다.

0 전혀 그렇지 않았다. · 1 거의 그렇지 않았다. · 2 가끔 그랬다. · 3 자주 그랬다.

4. 일이 잘못될 때면 공연히 자신을 탓하였다.

0 전혀 그렇지 않았다. · 1 자주 그렇지 않았다. · 2 가끔 그랬다. · 3 대부분 그랬다.

5. 특별히 이유 없이 무섭거나 안절부절못하였다.

0 전혀 그렇지 않았다. · 1 거의 그렇지 않았다. · 2 가끔 그랬다. · 3 꽤 자주 그러했다.

6. 요즘 들어 많은 일들이 힘겹게 느껴졌다.

0 그렇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잘 처리했다. · 1 그렇지 않았고, 대개는 일을 잘 처리했다. · 2 가끔 그랬고, 평소처럼 일을 처리하기 힘들었다. · 3 대부분 그랬고, 일을 전혀 처리할 수 없었다.

7.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었다.

0 전혀 그렇지 않았다. · 1 자주 그렇지 않았다. · 2 가끔 그랬다. · 3 대부분 그랬다.

8. 슬프거나 비참하다고 느꼈다.

0 전혀 그렇지 않았다. · 1 자주 그렇지 않았다. · 2 가끔 그랬다. · 3 대부분 그랬다.

9. 불행하다고 느껴서 울었다.

0 전혀 그렇지 않았다. · 1 가끔 그랬다. · 2 자주 그랬다. · 3 대부분 그랬다.

10. 자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다.

0 전혀 그렇지 않았다. · 1 거의 그렇지 않았다. · 2 가끔 그랬다. · 3 자주 그랬다.

자가 진단 테스트 결과

총 점수

- 0 ~ 8점 : 대체로 평안한 상태
- 9 ~ 12점 : 상담이 필요한 상태
- 13점 이상 : 심한 우울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점수 합이 10이 넘었다면 우울이나 불안 증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산모의 우울이나 불안 증상의 정도를 사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적인 검사 도구는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은 의료전문가(의사)의 진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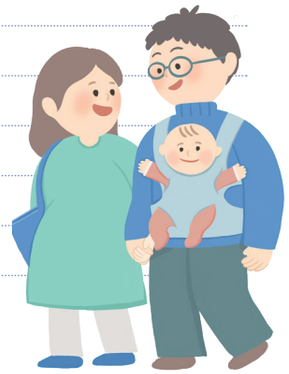
MEMO